
미술분야 창작대가 제도 개선 토론회

2020. 10. 13.



주요 일정

[제1부] 창작대가 제도 개선방안 제안

13:00~13:1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소개 및 개최배경 설명 -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13:10~13:25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발제 : 창작대가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과제 -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3:25~13:55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 미술관 : 대가(작가)비지급 개념, 대안 등 쟁점과 방안 - (국립현대미술관) 김준기 학예실장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백기영 운영부장 - (사립미술관협회) 이명옥 명예회장
13:55~14:45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단체 : 창작대가 개선에 관한 제언 - (한국미술협회) 김종근 학술평론분과위원장 - (민족미술인협회) 이승곤 이사 - (미술생산자모임) 강정석 작가 - (미디어아트협회) 김창겸 이사장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14:45~15:00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제2부] 원탁회의 토론

15:00~16:00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토론자 : 제1부 발제자 참석 (좌장 : 국립현대미술관 김준기 학예실장) • 온라인 참여자 질의응답
16:00~16:1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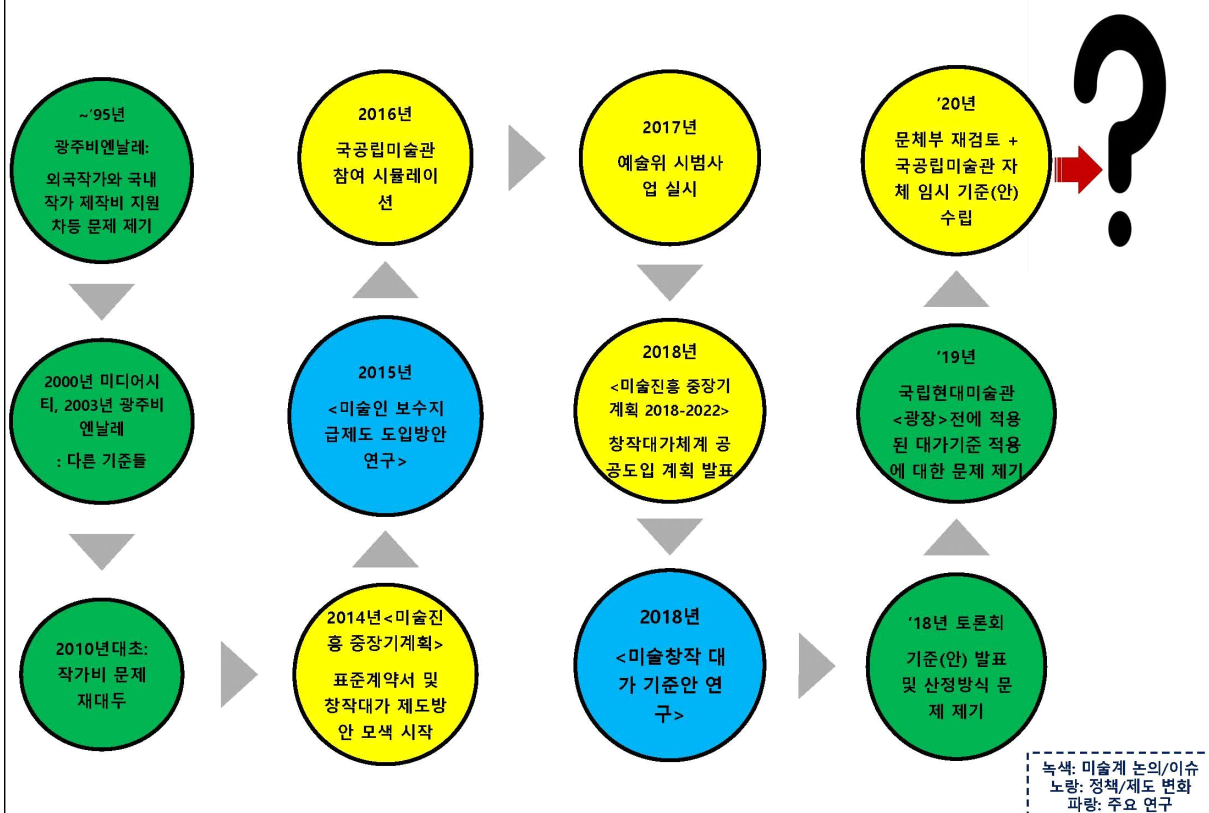
창작대가기준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과제

2020. 10. 13.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논의의 본격적 시작과 전개



주요 이슈들

Issue 1. '작가에게 지급되는 대가' 개념 문제

[2015년 연구의 개념]

- 작가비: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참여에 대한 보상 (Honorarium + License Fee)
- 사례비: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인건비성 경비 (Payment)
- 제작비: 작품 제작 실비(Production cost)

[2018년 연구의 개념]

- 작가비: 존중적 보상 + 저작권법 제19조의 전시권 의거한 저작권 사용료 개념
- 사례비: 전시참여자(작가, 비평가, 기획자 등)에게 지급되는 용역제공 대가로서의 인건비
- 제작비: 작품 제작 실비

주요 이슈들

Issue 2. 개념과 산출방식의 연계성 문제

- **존중의 의미를 강조할 때:** 참고단가 산정 시, 존중의 의미가 담긴 금액을 기준/참고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 + 저작권/용역제공 여부 등과 분리된 보상 (평균 월급여? 비슷한 전문성을 지닌 직업의 월 급여? 전문직의 용역인건비 단가? 최저임금? 예술가 평균소득 기준?)

Q 작가당 존중의 정도를 다르게 할 것인가?

모든 전시기관/단체가 작가에 대한 존중 의미의 보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존중 의미의 보상임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총 금액? 비교대상?

주요 이슈들

Issue 2. 개념과 산출방식의 연계성 문제

- **전시권 등의 저작권을 강조할 때:** 저작권 사용료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 작품 가치?

'18년 기준(안): 1일 기준금액(5만원) x 전시일수 x 작가별 배분율 x 조정계수

Q. 저작권 사용료라면, 작가비보다는 '전시비'가 맞지 않은가?

대여비와 진정 다른 개념인가?

'18년 기준(안)의 1일 기준금액 5만원은 미술시장 전시회당 평균매출액 근거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주요 이슈들

Issue 2. 개념과 산출방식의 연계성 문제

- **노동의 대가를 강조할 때:** '예술노동'을 얼마나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노동시간의 근거, 시간 당 단가 등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18년도 사례비(안)= 1시간 기준금액 15,778원 x 창작시간 x 전시유형 x 조정계수

* 1시간 기준금액 산출방식= 학술용역단가 중 연구보조원급 기준금액 ÷ 월 근로시간

* 창작시간 산출방식= 전시기획자 판단

* 전시유형(개인전~40인 초과전)

* 조정계수: 전시예산 및 반복출품가능성에 따라 전시기획자 판단

Q. 예술창작노동의 대가 기준액을 학술용역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으로 일괄 계산한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창작시간 산출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주요 이슈들

Issue 3. 일괄 기준 적용방식의 문제

-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괄 기준 및 산식 방식 중심으로만 논의되었는데, 과연 이것은 적절한가?
- 최근, 기존 제안(안) 외에 몇 가지 방안들의 실험적으로 적용되거나 논의되고 있음
 - 1) 작가 당 일괄 고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예. 1인 50만원)
 - 2) 작품 당 대여비의 개념처럼 1작품 당 전시대여비를 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 3) 기관/단체의 전시예산 대비 일정 비율(3~10%)을 작가비 총액으로 결정하고 작가 당 배분하는 방식
 - 4) 기관/단체의 1년 총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작가비 총액으로 결정하고, 전시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 당 작가비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단, 최저 작가비 기준 비율을 결정해놓고)

의의와 과제들

- **찾아낼 수 있는 의의**
 - ✓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작가비 제도 관련 논의들은 관련 기관 및 종사자+작가들에게 '작가비'가 제작비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넓히고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음
- **남아있는 과제들**
 - ✓ 제도적 일괄 기준제시 vs. 복수의 적용방안 제시 vs. 자율안 맡기기 무엇을 할 것인가?
 - ✓ 협의와 논의의 필요:
 - ① 작가 당 일괄지급 vs. 차등지급
 - ② 전시예산비율 등 전시기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 vs. 작가비 고정금액/고정비율 제시 방식
 - ③ 작가 별 협의사항 vs. 같은 기관, 같은 기준 적용 등
 - ✓ 작가비, 전시저작권비, 대여비, 사례비, 용역인건비 등의 혼재된 용어와 개념의 정립



미술창작대가 지급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김준기

순서

1. 배경 및 목적
2. 경과 및 내용
3. 한시적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안)

1. 배경 및 목적

- ✓ '19년 미술창작대가기준(안) 적용 '작가비' 관련 **미술계의 개선요청**
- ✓ '미술창작대가기준 개선 토론회'(19.12.19.) 이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지연
- ✓ 이로 인해 '20년 상반기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가비' 지급 관련
현안 발생
- ✓ 현 코로나 19 상황에서 창작대가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미술관 자체 기준(안)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여 적용

2. 경과 및 내용

- ✓('19.12.19.) 미술창작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참가 및 미술계 의견 청취
- ✓('20.3.9.) 학예실 1차 논의, 미술창작대가 지급 비용 및 명칭 논의
- ✓('20.3.10.~13.) 학예실 내부 의견조회, 관련 부서 회의 등
- ✓('20.3.16~30.) 미술관 직원 의견 수렴, 전체 부서장 논의(총 3회) 및 관내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초안 마련
- ✓('20.4.2~8.)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의뢰
- ✓('20.4.9.) 운영자문위원회 검토의견 결과수렴

2. 경과 및 내용

- ✓('20.4.13.) 운영자문위원회 자문결과 관련 학예부서장 회의
- ✓('20.4.14.~17.) 2020미술창작대가(전시참가지원비) 예산 지급액(안) 작성
- ✓('20.4.16.) 관내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안) 마련 회의
개인전 500만 원/ 단체전 50만 원 일괄 적용(안) 채택
- ✓('20.4.20.) 전체 부서장 회의 논의 및 검토
- ✓('20.4.23.~27.) 운영자문위원회 최종 지급기준(안) 검토 및 동의 의견 수렴

3. 한시적 미술창작대가 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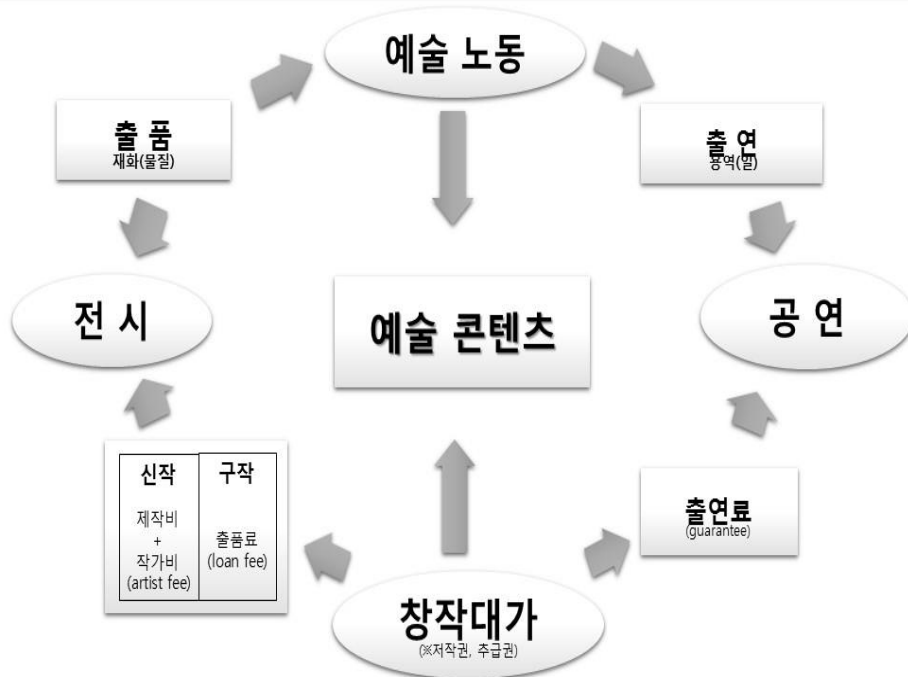
- ✓ 명칭: 작가비 → 전시참가지원비 → 작가비
전시 참가에 대한 존중 및 보상개념 명확히 함
- ✓ 지원금액: 단체전(50만 원), 개인전(500만 원) 일괄적용
- ✓ 적용기간: 문체부 개정(안) 공표 전까지
- ✓ '20년 지급 중, '21년 예산 6억원 확보

3. 한시적 미술창작대가 기준(안)

✓ 한시적 기준(안) 근거

- 운영자문위원회 미술창작대가 상향조정에 대한 자문반영
- 미술창작대가 예산 미확보로 한시적 적용
- 전시별 차등 지급에 따른 혼선 개선
- 대규모 단체전 1인당 지급 금액 최소 단위 산출에 대한 기존 수식 개선
- 개인전 전시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안 개선

예술노동과 창작대가 관계도



미술창작대가비(Artist fee)제도 정착을 위한 미술관의 요건들

백기영(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운영부장)

*

미술창작대가비 논의는 대략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했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마다 나오는 이 실태조사는 1년 동안 예술가의 연봉이 얼마라느니 작품 한 점도 팔아 본 적이 없는 작가가 몇 프로라느니 하는 선정적인 기사의 소스만 제공할 뿐 실질적인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그해 보고서에 올라 있었던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 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2013년 청년미술작가들로 구성된 미술생산자모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건의>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 이들은 지원 당사자 인건비 책정 및 기준을 명시화하고 보조금 취소결정 가능사유 일부를 폐기하며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이듬해 <미술진흥 증장기계획>을 발표하고 <미술작가 보수제>와 <표준계약서>(2014.9)도입을 예고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계획이 여러 해를 거쳐 시행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2019년 1월에 이르러서야 <2019 미술창작대가 기준(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안이었지만, 이 기준안이 발표 되고 나서 미술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이겠지만, 작가,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갤러리나 대안공간 그리고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가들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중앙정부가 내려준 권고안이 강제적인 성격이 없고 현실적으로 빠듯한 예산에서 아티스트피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전시공간 운영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가 발표한 기준안을 살펴보면, 창작대가를 전시에 필요한 작품의 제작/ 제공, 전시기획/ 구성 및 평론 등을 위한 창작 아이디어, 용역 등을 제공한 작가, 전시기획자, 평론가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보수로서, 크게 '작가비', '사레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창작대가비의 개념상 작품제작(지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작가비'는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서,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한다. 신작이나 구작을 변형하거나 구작 출품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소장품을 전시하는 경우 및 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작가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산식이 제공되었고 조정계수를 두어서 작가별로 차등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장의 큐레이터들은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라면 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우리 미술관의 경우는 적절한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사레비' 부분인데, 문체부의 기준(안)은 전시를 위한 작품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하여 작가, 기획자, 평론가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작

가는 전시를 위해 새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변형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고 기획자의 경우는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이 비용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미술 분야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문체부가 제시한 산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연구보조원 인건비(참여율 100%)를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 1시간 기준 액을 15,778원으로 제시하고 창작시간과 전시유형에 따라 조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주머니 사정을 탈탈 털어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사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산식을 근거로 지급된 <광장>전의 아티스트피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미술창작대가 제도>는 현실화 시킬 수 없다.

미술관은 이 제도를 구체화 시키고 실현시켜야 할 당사자이며, 작가들 또한 이 제도를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미술관이 <표준계약>을 근거로 <미술창작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갤러리나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대안공간에서도 제도화 될 것이며, 상업 갤러리들은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전속작가 제도를 안착시켜갈 수 있다.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속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화랑은 총 150개로 우리나라 전체 화랑의 32.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서면계약을 진행하는 화랑은 81개를 54.3%에 불과하고 48개 화랑은 32.1%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계약형태가 없는 화랑도 20개 13.6%나 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19년 백지숙관장의 부임으로 <미술창작대가 TF(2019.4)>를 구성하고 2014년부터 미술관이 지급해 온 작가사례비, 작품기획연구진행비, 작품제작지원비 등의 혼재된 예산을 검토하였다. 미술관의 전시예산 중 10프로가 넘는 작가비, 사례비를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작가비의 규모를 정하고 사례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문체부의 기준안을 근거로 예산을 산출했다.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여름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의 형편에 맞는 <미술창작대가 기준(안)>을 미술관 규정으로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코로나 19로 2021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아티스트 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과의 협의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후 의회 승인을 획득하면 내년부터 <미술창작대가비>를 공식화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예산편성에서 문체부의 권고안이 강제적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타 미술관의 선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미술창작대가 제도 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계약서 시행과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보완과 지원이 요청된다.

예술가가 직업인으로서 예술품을 창작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노무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예술인의 권리가 왜 이토록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 미술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실현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일괄 300만원의 아티스트 피를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애

당초 문화예술지원금에 자부담 비율을 책정하거나 지원 당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상한 지원정책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예술가의 창작권 침해의 당사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문화재단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예술가를 지원금의 형태로 고용하는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과 아티스트피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국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예산의 형편에 맞추어서 미술관들이 시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문체부 차원에서 권고안이 어떻게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미술분야 창작대가는 예술가를 사용하거나 작품의 제작을 요청하는 용역계약의 형태 이외에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혹은 대여에 따른 지불, 작품의 판매에 대한 매매 계약의 수행 등으로 더 세분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전시나 기획 혹은 비평의 생산 등에서 나타나는 예술가를 고용하거나 창작행위를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이나 임시적 형태의 고용은 현 정부가 고민하는 특수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정책과도 맞물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현장의 창작자인 작가, 기획자와 미술관 및 공공문화기관들이 의식적으로 이 골치 아픈 제도에 관해서 대책을 함께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그것을 앞당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 미술작가 보수) 예산지원 형평성의 문제점

발제자 :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명예회장

아티스트 피(Artist Fee, 예술가 보수) 시범 시행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전제 하에 사립미술관을 대표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며, 공립미술관에는 문체부가 시범 운영에 따른 별도 예산을 지원한다. 즉 사립미술관은 '아티스트 피' 지원대상이 아니다. 문체부는 '미술작가 보수제도'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미술관에만 적용되며, 민간 영역인 사립미술관이나 비영리전시공간은 의무 준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미술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문체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첫째, 작가 차별이다.

국공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아티스트 피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아티스트 피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국공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사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을 편 가르고 차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칫 국공립미술관 전시 참여 작가에 비해 사립미술관 전시 참여 작가의 경력이나 작품성이 뒤떨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국공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와 사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인인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럽다.

24년 동안 사립미술관인 사비나미술관을 운영해온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국공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사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거의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 겹친다.

작가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기준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모순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티스트 피 예산지원의 이중적 잣대가 미술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는 다음의 데이터가 말해준다.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등록 미술관 현황에 따르면 국내 미술관은 총 259개관으로, 국립미술관 1개관(0.4%), 공립미술관 71개관(27.4%), 사립미술관 172개관(66.4%), 대학미술관 15개관(5.8%)으로 사립미술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전시 참여 작가와 출품작품 수도 사립미술관이 국공립미술관에 비해 많다.

<2020 전국 사립미술관 실태조사(문체부 주최,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주관)>에 따르면,

국내 사립미술관 총 138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19년에는 상설전 595회, 특별전 및 기획전 777회, 연간 참여 작가 총수 11,484명, 연간 전시작품 총 수 48,441점으로 나타났다. 연간 11,484명에 달하는 작가들이 '미술작가 보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 수치다. (매해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미술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대학미술관으로 구분될 뿐 그 기능과 역할은 같다. 국공립, 사립, 대학미술관은 모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명 박미법)'에 의한 미술관 소장품 규모와 가치, 학예사 보유, 시설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미술관으로 등록된다. 국공립과 사립, 대학을 차별하는 미술관 정책은 박미법 제33조에 명시된 미술관 자료 정리, 정보처리, 시설 표준화 및 미술관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인 "미술관 협력망" 조항에도 위배된다.

'아티스트 피' 예산은 사립미술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전시 참여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다. 현재도 국공립미술관의 입장료 무효화 정책으로 유료 입장료를 받는 사립미술관은 관람객 확보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티스트 피'로 전시 여건에서 격차를 더 벌여놓으면 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작가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문체부는 사립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많은 작가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아티스트 피 예산 지원 대상에 사립미술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큐레이터 차별이다.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작품을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해 관객에게 선보이는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전문가다.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전체 과정과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챙겨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는 매우 높지만 자존감 높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취업준비생이 무척 선망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립미술관이 아티스트 피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큐레이터의 위상이 낮아질 우려가 높다. 전시 참여 작가에게 '아티스트 피' 지급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 부담스런 책임을 떠맡게 되었으니 말이다. 일부 작가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거나 심지어 전시 참여 자체를 거부당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큐레이터의 사기는 떨어지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전시 기능과 역할이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여러 사립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 '아티스트 피'를 둘러싼 작가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립미술관 큐레이터의 가장 큰 고민은 매년 국민세금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미술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부족한 전시예산과 인력)에서 경쟁력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일이다. 오죽하면 사립미술관 큐레이터들 사이에서 '사립미술관에서 훈련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예산으로 가성비 높은 전시를 만들 수 있는 큐레이팅 능력을 갖게 되었다' 라는 농담이 오갈까? 큐레이터가 아니라면 한 전시회를 개최, 종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아티스트 피 이외도 화집이나 도록, 각종 인쇄물 제작비, 작품 운송비와 보관비, 작품 설치비, 작품 보험료, 전시홍보물, 전시디자인 비용, 기자간담회비, 전시장 관리 인력비, 행정비용 등 지출항목을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정도다. 기업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일부 미술관을 제외한 사립미술관의 수입은 입장료와 국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인 전시지원금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사립미술관이 크고 작은 전시공모사업에 응모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해 선정되기가 어렵고, 다행히 뽑히더라도 예산이 전시 당 1~2천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전시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국공립 미술관 외의 장소에서 전시하는 작가, 아티스트 피를 지급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사립미술관과 비영리기관 큐레이터, 독립적으로 일하는 큐레이터 어느 쪽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가장 큰 작품 발표의 장(場)이 사라진다.

'수준 높은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소장한 국내 대표미술관이 어딘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물으면 대체로 미술전문가들은 (리움미술관이 상설전만 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공립미술관이 아닌 사립미술관인 '리움미술관'을 꼽는다. 세계적인 건축물과 현대미술 명품컬렉션 등 전시 수준과 소장품에서 단연 국내 최고이기 때문이다.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2002년 국내 최초의 사진전문미술관을 개관한 '한미사진미술관'을 추천한다. 한미사진미술관은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 워커 에반스 전, 현대사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프랭크 사진전, 근대 사진사의 보석으로 평가받는 유젠느 앓제의 빈티지 작품 시리즈 전, 세계적 사진가 단체인 매그넘 포토스와 협력 전시인 '매그넘 컨택트시트' 등 명품사진전을 기획했으며, 사진 역사를 빛낸 거장들의 대표 작품을 수집, 아카이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진작가들을 후원하는 등 사진계의 위상을 높여왔다. 송영숙 관장은 한국 사진의 국제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1월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슈발리에장을 수상했다.

혹자는 기업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술관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서 좋은 전시를 기획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개인이 설립한 사립미술관들도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를 자주 개최해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몇몇 사립미술관은 저예산으로도 차별화된 주제와 뛰어난 큐레이팅으로 전시기획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분야 피해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각예술 분야는 678억 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했고 전시 취소 건수는 1,553건에 달한다. 유료 입장객이 거의 없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사립미술관들에게 아티스트 피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양질의 전시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전시비용이 늘어나면 국내미술관 중 66.4%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미술관들은 전시 횟수를 줄이거나 전시 기획을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생존 전략을 찾게 될 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작가들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립미술관의 172개 전시공간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체부는 사립미술관을 배제한 '미술작가 보수제도' 시행이 전시환경을 악화시킬뿐더러 시각예술 작품발표의 가장 큰 장(場)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끝-

‘아티스트 피(Artist Fee·작가 보수)’ 지급 제도에 관한 의견

김종근 (미술평론가, 미협 학술 평론 분과위원장)

1. ‘아티스트 피(Artist Fee·작가보수)’제도의 시행에 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예술가의 창작 욕구와 경제적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작가 지원이 한국미술 발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 이미 논란이 되고 있듯이 작가 유명도, 인지도·작품·경력, 재료, 종류 등에 따라 아티스트 피가 결정되는데, 그 일방적인 기준이 공정하고 타당한가 라는 논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작가 마다의 지급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동료 작가들과의 비교, 신진, 중견, 원로)

*작가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책정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

2) ‘아티스트 피(Artist Fee·작가보수)’재료비나 노동 시간 등의 일률적 적용이 불공정하다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국, 공립은 예산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사립미술관 혹은 대안공간들은 심각한 전시 기획 위축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4) 전시 기획의 의도와 방향, 작가선정 수, 전시 규모, 전시기간, 전시 기획 횟수 등을 분명 변경할 것이다.

5)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사립미술관이나 대학, 혹은 문화예술회관, 대안 공간 등은 예산이 부족하여 작가의 발표 혜택 감소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6) 정부의 이러한 예산이 확정적인가? 또한, 충분한가도 관건이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다가 예산 운영 문제로 포기되면 역효과만 있을 것이다.)

3. 제안 1:

1) 굳이 이러한 문제가 많음에도 시행해야 한다면, 올해 국공립 미술관 여섯 곳 외에 ‘미술 작가 보수 제도’를 사립이나 대학 등으로 공모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 후 장단점, 문제점을 보완 후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4. 제안 2:

이 예산으로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 청년작가들을 발굴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그 작품들을 구입하고 후원하는 (기존 미술은행과는 시스템이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특별 제안한다.

결론: 고등어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고등어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그들이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작가들 탄생에 이 예산이 사용된다면 좋겠다. 절대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려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실업에 처하는 그런 정책 수립의 역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아티스트 피 제도다.

미술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사)민족미술협회 이승곤

미술 창작대가 제도를 입안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 해를 두고 관련 미술인(단체)들과 협의와 토론을 하여 왔으나 상호 너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긴 하여도 단체 간 이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현안은 전시장에 작품을 걸었을 때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작가에게 지불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그간 정리된 용어로 본다면 작가비, 대여비, 제작 지원금 등이다.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주체는 미술관이고 작가는 선택의 대상이니 부정할 수 없이 '갑을'의 관계이다. 미술관의 꼴을 받는 것은 작가에게는 자부심이고 자기 작업에 대한 문화예술적 성공 평가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계는 약자인 미술인을 소극적 작품 공여자가 되게 하였고 미술관은 선별의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기관이 되게 하였다.

제도를 놓고 5~6년이 지나도 창작대가안을 성안하지 못함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과도하게 탓할 것도 아니다. 왜? 애초에 우리는 패트론의 지원을 받지 않고 생활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직업인처럼 사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알바생의 삶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미술인들에겐 최저임금이란 용어도 없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각개전투 하듯 각자도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온 것이다. 변화는 늘 그렇다. 때로 지지부진하고 여건을 만들기도 어렵다. 새로운 것은 늘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가장 큰 저항은 관행이며 무슨 근거로 바꾸냐는 것이다. 기나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돈' '비용' '예산'이란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다.

다행히 갑론을박하며 그간 창작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당위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문체부 미결사안으로 본안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논의가 되지 않는가? 문제는 비용이다. 지금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많은 예견을 한다. '지급되는 보수가 너무 적어 미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시가 축소될 것이다.' ' 무료 초청작가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 질 것이다.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등

본안의 주관부서인 문체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의 의지를 갖는 다는 것은 대단한 변

화이다. 미술인 지원 입장에 대한 관련 부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토론회를 통해 참여단체들이 다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조정하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다. 합의안의 내용이 부족할 수 있고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문체부의 정리된 안으로 입법되어 내년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시행 전에 꼼꼼하게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 또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만들어진 제도는 매년 관련 단체와 노사협약과 같은 정례협약이 있어 보완되어야 한다. 개별화된 미술인이나 미술인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단체교섭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상호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 고쳐 나가야 한다. 문체부와 미술인(단체)은 상호 지원과 협력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미술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작업 방법이 다 다르듯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과 방법도 천차만별이라 할 만하다. 법과 제도는 공평을 지향하지만 모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많은 미술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인 안에서 소수 작가들이나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역사인지 모른다. 미술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 조직화되고 요구가 명확한 상층부의 일부 문제가 풀리면서 전체 미술인들의 또 다른 문제인 보편적 복지나 창작지원금 문제도 근시일 안에 논의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평생 궁핍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대다수 미술인들은 국공립 미술관이나 규모 있는 사립 미술관에 초대 한번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가난한 무명의 미술인에게도 그 도도한 미술관의 전시 벽 한 평쯤을 이제는 내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문체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분들은 우선 전국의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에 현재 논의 되는 수준의 작가 보수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단체 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행안을 만들어 확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량화가 불가능한 작가들의 미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안을 만들고 있다. 건국 이래 없었던 사업을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있고 미술인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동시에 기대가 충만해 있기도 하다. 출발은 늦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은 미술인 지원체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여 본다. 지원받는 미술가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진작시키고 미술을 통한 한류 확산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문체부의 담당자분들이 한국 미술사에 미술인의 권리장전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미술창작대가 제도안을 성안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제언 요약

1.현재 시범실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에 집중하여 창작작가대가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것.

2.시행 이후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매년 전국미술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미술인(단체)들과 정례적인 협의를 시행할 것.

3.지자체 문화행사나 공공미술 참여 단체 등에 치우쳐 배정되는 방대한 예산을 개별 미술인을 위한 맞춤형 창작활동으로 일부 전환하여 예산운영의 균형을 잡을 것.

문체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강정석(미술가, 미술생산자모임)

어떻게 된 건가?

아티스트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제도화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부터만 세어도, 2014년부터니까 벌써 7년째에 가까워졌다. 2017년에는 작가 보수제에 대해 작은 범위의 시범 적용을 진행했고, 2018년엔 미술창작 대가 제도로 이름을 변경하고 큐레이터와 평론가까지 적용대상을 넓힌 후, 산출식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2019년에 시범 적용도 했다. 공연히 알려진바, 국민대 법대 교수 황승흠이 제출한 산출식의 문제는, 연구 과정 중에 문체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하며 이미 예견되었다. 예견된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는 데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문체부의 의도가 다년간 지속하여온 ‘아티스트피’ 제도화 논의를 표류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현장의 미술인들이 이미 전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2019년 12월 19일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자료집에는, 이미 문제의 배경, 이 모든 논의의 과정 및 목표, 미해결된 지점, 구체적 해결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미술창작 대가 제도에 대해 떠올리면 머리가 흐릿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요약을 위해 지난 자료집을 정리해본다.

먼저 발제자인 홍태림(미술비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 민간위원)은, 국내에서 대가기준과 관련된 문제의 시발점을 더듬어 보았다. 1995년 열린 첫 광주비엔날레의 외국작가-국내 작가 간 지원 차별에 대한 비평가 류병학의 회고를 인용하며 시작하는 이 발제문은,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가가 임노동 외의 노동을 모르는 한국사회의 안이자 밖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감내해 온 고통을 상기시킨다.

미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술생산자모임에 의해 2013년 재차 제기된 이후, “생각보다 이른 시기인 2014년 겨울”에 제도화는 시작되었다. 그런 제도화 과정상 파행을 목격한 홍태림의 발제문은 아래와 같이 끝을 맺는다.

“현재 다수의 미술인들은 예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문체부에 분노와 피로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여러 예술인들은 문체부에게 현실성 있는 예산확보, 사례비 지급과 관련한 경력 등급화 반대, 창작 대가와 고용보험의 연계, 창작 대가의 하한선 및 상한선 설정, 공공의 예술지원 사업에서의 사업 신청자 인건비 책정, 창작 대가 제도 관리 및 갱신 전담기구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간의 논의를 다시 호출하고 보충하고자 한다. 그러니 문체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술 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

지금도 위 내용에 딱히 덧붙일 주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제도화 논의의 성과는 적지 않다. 단순히 말해 아티스트피를 받은 작가들이 늘어났다. 과거엔 임노동과는 다른 창작노동과 저작권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일에 대해 근거 없이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당장이라도 미술계가 망할 것이라며 엄살을 부리는 모양새였다. 지금 그런 이들은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춘다. 이젠 제도화 과정에 참여한 모든 미술인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온 결과다.

다만, 같은 자료집에 2015년 7월에 발표된 “미술인 보수 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원이었다던 김혜인이 지적한 대로, 여전히 업계가 합의해야 할 개념이 남아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창작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작품/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료인가?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가?

미술 작가/기획자/평론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의 성격인가?

미술창작이란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는 어떤 의미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위와 같은 주요한 문제들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제쳐두고, 졸속으로 학술용역인건비 기준 단가에 연동해 만들어진 2018년산 ‘미술창작 대가기준 산출식’의 문제점은, 김혜인의 발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전시권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1일 기준금액을 시장의 평균 매출액으로 활용한 부분. 다수의 국·공립 미술관이 무료 전시를 여는 상황에 전시권의 저작권 기준금액을 전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

“음악 저작권이나 방송사용료 등의 사용요율과 전시저작권의 적용방식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김혜인)

-창작노동에 대한 대가기준을 창작활동 시간기준으로 잡고, 학술용역인건비 기준 단가에 연동하여 1시간 기준금액을 설정한 점.

“신작이건 구작을 변형했건 전시 참여를 위해 투입된 창작 시간에 대해 작가건 기획자이건 과연 정확하거나 합리적으로 그 소요 시간을 산정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김혜인)

동 자료집에서, 미술생산자모임 일원이자 작가인 이미연은 미술창작 대가기준의 작가비와 사례비 공식이 가진 ‘허술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공식은 곧 아이디어다. 내용이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상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안의 산출식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작가로서의 존재감과 창작 행위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같은 요구들이 ‘함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작가비와 사례비의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숙고된 공식이기보다 단지 어느 정도 말이 될만한 곳에서 근거를 찾아 조합시킨 공식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제언했던 내용들도 단지 기계적으로 반영됐을 뿐이다. 그 결과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미술창작 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명목뿐인 보잘것없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홍태림이 말한 “다수의 미술인들은 예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문체부에 분노와 피로감”이란, 바로 공식의 이런 ‘허술함’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집에서, 아트 스페이스 풀의 안소현은 합의가 어려운 ‘창작 대가에서의 차등 지급 기준의 문제’를 정리하는 시도를 한다. 그는 애초에 이 논의가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치화 및 계량화가 어려운 가치(아이디어, 창의성, 전문성 등)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창작 대가를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작노동과 임노동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문장이다.

“(...)학술용역 인건비와 연동하여 가, 나, 다 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차등 지급의 기준이 때로는 작가에게, 때로는 기관이나 전시의 규모에 있어서, 타당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술가에게 창작 대가를 지급한다고 할 때 어떤 개념에 어떤 차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재검토해보기로 했다.”

검토 중 안소현은 작가비와 같이 분명하게 ‘산출 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정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 어려운 개념들의 합의가 남아 있으나, 방법이 없지 않다는 점을 봐야 한다. 설문조사는 아티스트피를 처음 공론화하며 자료집을 냈을 당시, 미술생산자모임도 취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미술인들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려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토론회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미술 분야 창작 대가 제도의 시범 적용 대상이 국·공립 미술 기관임을 고려하면, 해당 기관을 거쳐간 기존 참여 작가와 학예인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천천히 토론하면 된다. 단순히 어떤 문제의 호오를 묻는 게 아니라, 설문의 참여자가 문제를 숙고할 수 있게 기존 전시 예산과 기관의 규모, 예산 내에서 작가비의 퍼센티지 등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고, 기존 연구된 다양한 산출식이나 요율표의 장단점을 추려 나가면 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자료집을 훑었는데도 위처럼 양질의 제언이 나온다. 오늘 아래에 추가로 제언을 적으며, 이미 내놓은 의견에 무엇을 더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드는 건, 같은 의견을 비공개인 내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몇 년간 내어 왔기 때문이다.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견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최소한 왜 계속 같은 소리를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걸맞은 결과물을 원한다. 이 문제를 수월하게 다루고,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오늘날 이런 바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벌써 몇 번이나 담당자의 보직이 순환되며 보여주는 문체부의 기억상실이다. 다수의 기관과 단체가 각자의 아티스트피를 고려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법안을 이끌어 온 문체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서 할까? 문체부는 이제야말로 현장의 의견에 귀를 닫기 시작한 몇 년 전의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서로 다른 기관이, '아티스트피'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주장하는 상황, 업계의 당사자들이 벌일 창작노동에 대한 협상이 엉망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또 그런 상황들에 의해 이 제도를 시작한 모든 좋은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점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문체부에 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2018년 황승훈 교수의 연구가 틀렸다면, 우리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앞서 자료집에서, 김혜인의 2015년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가 제출된 이후 상황에 대한 흥태림의 진술을 보자.

"대가기준 제도는 2015년부터 국내 국·공립미술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중순까지도 특별한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문체부가 대가기준 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갑자기 흘러나왔다. 대다수의 미술인은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대가기준 제도가 어떤 기준과 규모로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물음표를 떠올리며 큰 불만을 드러냈다."

미술생산자모임이 조사해온바, 대가기준 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5(+1)곳에서 시범 운영했다는 바로 그 '2017년 9월' 직전의 시간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다.¹ 2015년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가 문체부에 제출된 후, 어떤 연유에서 '작가보수제'가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되었는가?

¹ 상세한 내용은 올해 출간 되는 미술생산자모임의 3차 자료집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다수의 미술인들이 2017년의 시범 운영에 사용된 산출식이나 요율표, 그리고 그 기준, 마찬가지로 2019년의 산출식과 그 식이 만들어진 배경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소한 내부 간담회에라도 제공하라고 요청해왔다. 무슨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어떤 근거로 그런 산출식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는지? 문체부가 매년 간담회에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곤 하나, 무슨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니 점점 할 말이 줄어들 뿐이다.

2015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 9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째로, 2016년 봄엔 김혜인 연구원뿐 아니라 몇몇 작가와 국·공립 미술 기관 직원, 회계사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가 조직되었다. 이 태스크포스는 각 기관의 과거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을 시뮬레이션 했다고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떤 부분이 합의가 어려웠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제 시각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 제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공립 미술관 여섯 곳을 대상으로 ‘미술 작가 보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것. 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확실시되어야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시범 운영 중인 현재로서는 변동의 여지가 많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매체가 보도한 대로 일률적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가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실질적 작가 지원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으로, 준비 기간과 결과 보고를 합한 전체 시범 운영 기간은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계획돼 있다.”²

둘째로 그런 과정 이후 2017년 9월부터 대가기준 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몇몇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다면, 그 운영의 결과와 그로 인해 어떤 점에서 개선의 여지를 느꼈는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시범 운영 이후 김혜인 연구원에 이어 황승흠 교수가 연구를 시작했고, 방향을 틀고 이름이 변경되었고, 2018년 내내 파행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9년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공연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바로 이 지점을 돌아보고 다시 의견 취합과 지난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² “아티스트 피_예술 노동의 가치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티스트 피 제도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노블레스 홈페이지, 2017년 12월 7일, 백아영 에디터.

링크: <http://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detail.php?no=6634>

기재부로부터 현실적인 예산으로 증액 실현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산 증액 이야기를 빼고 산출식을 끼워 맞춰선 안된다. 과거 2019년 제시된 산출식과 같은 모양이 될 뿐이다. 아티스트피를 관리하고 갱신할 기구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동시대 미술 현장의 모양새를 제도에 반영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체부는 그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된다. 합의를 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하면 된다.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시작점에 동의한다면, 개선을 위한 첫 단추는 개념의 정리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정도는 합의해야 한다. 왜 우리는 아티스트피처럼 복잡한 문제를 힘겹게 제도화하고 있는가?

미술가의 경력은 신용사회에서 여전히 휴짓조각도 되지 못한다. 10년을 성공적 미술가로 살아도 300만 원도 대출받기 어렵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전시하다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같은 업계 사람들조차 잠시 동정의 제스처를 취할 뿐이다. 이는 창작노동에 대해 무지하고, 애써 생각치 않으려는 한국사회의 관행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미술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티스트피와 그 개념,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일을 벌이는 이유는, 작가에게 전시가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창작노동'이 임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미술 창작노동'은 여타 업계와 또 다른 양상을 띈다. 관련해서 최근에 들게 된 한 업계인의 주장이 내겐 이런저런 생각에 도움이 되었다. 그 내용만 익명으로 아래에 적어 본다.

-미술관이 커미션을 주거나 제작비를 지원하면 작품 소유권/저작권은 미술관이 가지는 게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가요?

이는 미술 창작노동의 특수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동시대 미술은 사회 속 개인/컬렉티브의 고도의 '자율성'이 만들어내는 표현을 보호하고, 장려해왔다. 왜 그런 일을 할까? '주문 제작'과는 다른 이런 '표현'이 다양성의 뿌리를 만들고, 사회 속 다양한 가치를

공적으로 공유하도록 돕고, 기술 변화로 인해 점점 증대하는 임노동 바깥의 노동을 사회가 직시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창작자의 표현과 전시 기여가 그들 자신의 목을 죄어 업계 또는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언뜻 복지의 맥락과 겹치는 지점도 있으나, 반드시 복지에 대한 건 아니다. 아티스트피는 그저 '전시회'의 참여에 관한 보상적 맥락을 다루기 때문이다. 창작노동은 있다. 임노동과 다를 뿐이다.

앞서 2018년 황승흠 교수가 제안한 산출식을 언뜻 보면 엉뚱하게도 이런 복잡한 노동 형태에 기인한 기여와 존중을 숫자로 계산해내려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창작 시간을 왜 계산하려 하는가? 목표는 그런 허황한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전시가 이뤄지는 기관/갤러리와 작가가 서로 형평성에 맞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요율이나 산출식이 필요한 것뿐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산출식을 논할 때 빠짐없이 기관의 전체 예산이나 전시의 총예산 중 일정 퍼센티지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또 동일한 선상에서 예산이 적은 전시나 참여 작가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대비해 최저선이나 최대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때론 현물을 주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이를 공적으로 기관의 예산에 대한 '작가의 기여'로 기록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도 있다.³

이때 중요한 건 '협상'이다. 이 모든 일을 오랜 기간 토론을 거치며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기관의 직원(예를 들어 전시 큐레이터)과 창작자가, 멍하니 앉아있지 않기 위해서다. 큐레이터가 별도의 안내도 없이, 당신의 작가비는 얼마 얼마입니다. 하는 식으로 통보하고, 작가는 작가비 개념이 뭔지 모르지만, 돈을 준다니 일단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금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노동의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로 안내하고 협상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문체부가 목표 삼고 노력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다. 이를테면, 시범 기관이 되는 국·공립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작가에게 해당 기관엔 어떤 창작 대가기준이 있고, 어떤 연유로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안내를 통해 전시의 성격, 전시가 이뤄지는 기관의 규모와 예산, 전시 총예산, 평균적 관객 수, 해당 전시의 기획에서 신작 또는 구작 변형 등으로 작가가 기여하는바, 구체적 작품의 성격을 상호

³ 네덜란드 Kunstenaas Honorarium의 경우.

링크: <https://kunstenaarshonorarium.nl/>

투명하게 이해하고, 그런 기여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되, 최저와 최대 선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협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역할이다. 동시에 그런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관의 감사에서 창작 대가가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적절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는지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가 더 나은 현장과 생태계, 업무 효율에 도움 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나아가 미술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자각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망가진 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걸 오랜 토론의 학습 결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맞지 않을까? 문체부의 옵션은 하나다. 현장의 미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미술분야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0. 10. 5

발제자 :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김창겸

1. 기본 전제

2004년 광주비엔날레 보이콧 이후, 지금까지 내가 주장해 온것은 미술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비를 더 달라는게 아니다.

‘지원비’는 오해가 많은 용어이니 분석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국공립미술관, 박물관, 지방자치제, 국가에 한정된 것이고 사립미술관, 갤러리, 비영리갤러리 등의 민간 영역은 아니다. (1)

정의로와야 할 국가제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 작가협약서 중

1. 작품제작에 따른 경비는 작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2. 기타 광주비엔날레와 합의된 사항은 전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작품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술전시, 비엔날레 등의 행사

광주비엔날레 등 각종 대형 미술행사의 본질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벤트다.

1995년 첫 광주비엔날레는 지역경제를 위해 국가가 미술, 미술인을 사용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첫 회에서 외국작가에는 참가사례비를 줬지만 국내작가는 전혀 없었다.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서 TV등 대중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던 한 한국의 인기작가가 전시종료 후 작품제작에 필요했던 4800만원의 빚으로 파산하고 작품은 압류되어 폐기되고 작가의 가정은 파탄나 이혼 당했다.

작가는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며 1인 시위했지만, 광주비엔날레 측의 보완된 제도는 재료비의 일부만 '지원' 하는 것이었다.

2009년 옛 기무사터를 국립미술관으로 만들어 시민들에 돌려준다는 의미의 '신호탄'전을 했다. 전시기획한 과천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사는 대략 50여명의 미술인들에 새 작품을 만들게 꿈 했다. 재료비도 인건비도 없었다.

미술인들이 문제제기한 후 50만원씩 의 재료비 일부를 받게 되었다. 인건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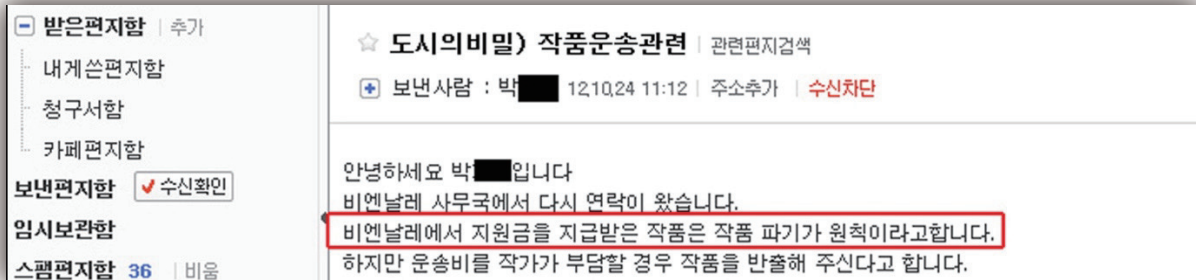
2012년 대구사진비엔날레사무국으로부터 받은메일에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작가의 작품은 파기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했다.

’신호탄‘전 때에도 이런 말을 구두로 들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질문한다.

국공립미술관, 비엔날레 등의 전시에서의 미술작품은 소모품인가?



3. 미술인보수지급제도

2015년 미술인 보수지급제도를 만든다고 문화관광부의 정책토론회를 했다.

나는 개인의 신분으로 발제를 했다.

2016년도 1500 m²의 큰 공간에서 3000개의 그림으로 설치된 50점의 작품을 3.5 개월간 대구미술관에 빌려주어 한 미술인이 전시를 했다.

대구미술관에서 책정한 전시예산은 1억원 정도라고 미술인은 말하고 추정하지만, 한 푼도 미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개관 50주년 전시 ‘광장’ 전에서 참여미술인 1인에게 지급되는 작가비는 ‘하루 250원’ 이었다.

이런 모독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수십년 동안의 지속적이다.

미술인을 모독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재능기부’, 사회적 약자에게만 요구하는 이런 착취, 강요도 없어야 한다.

4. 지원제도

문화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말한다. 이에 국가는 예술가를 ‘지원’ 하는 정책을 해 왔다.

국공립미술관 등이 사업목적에 의해 미술인에게 새 작품을 만들라고 할때도 ‘지원비’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공립미술관 등이 사업목적에 의해 미술인의 소유물인 작품을 빌려도 지원비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미술인, 기획자, 비영리갤러리, 사립미술관 등을 도와준다는 국가주도형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국가기관에 지원비를 신청했을 때 심사에 의해 선정되면 기금수령자는 자신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다.

기획비도 없다. 기금수령자는 자기부담금도 증명해야 한다.

기금수령자는 예산을 협업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로 주고 장비 등 임대를 하고, e나라도움의 회계를 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미술인, 기획자, 비영리갤러리, 사립미술관을 망하게 하는 구조이다.

혹은 편법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각종 지원사업 은 실제로는 예술가들에 경쟁을 시켜 일을 시키는 것이다.

1. 사 업 명 : 2020. [] 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사업 - [] 공공미술프로젝트

그 첫번째 개관을 기념한 첫 기획전시는 2020년 9월 15일(화)부터 27일(수)까지 []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집

민사소송에 대한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답변

김○○작가의 인대구미디어파사드 작품제작 지원비에 대한 음원비 요구에 대한 경과

1. 5월 22일 김○○작가가 대구문화예술회관 건물외벽을 현지 탐방하고 조사위해 처음으로 방문하고 박○○학예사와 김○○예술감독 3명이 오후 4시 30분 경에 만나서 행사에 관한 여러 내용을 공유하였다.

영리기업이 기획하는 전시도 국가로부터 지원비를 받기도 하는데, 기업은 '지원비'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아트페어)

비영리갤러리, 사립미술관 등은 '지원비'이니까 수익을 내면 안된다.

논리적 모순 혹은 이중구조이다.

국가는 예술인지원제도가, 예를들어, 국가대표축구선수에게 동네축구 가르치라고 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5. 예술인 복지제도

여기서도 지원비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지원비일 수 있다.

예술인 복지는 선별적 복지이다.

먼저 가난함을 증명하고 예술가임을 증명해야 하는 딜레마로 갖고 있다.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노파심에서지만, 그러므로 예술복지제도로 문화발전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

6.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미술인의 위치

국가는 국공립전시회에서 현재 미술인에게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국공립미술관에서 미술인에게 현장설치 등의 육체노동을 시켰어도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가가 예술가의 노동의 가치, 창작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예술가가 휘둘린다.

기업은 미술인에게 말할 수 있다. “너네는 인건비가 원래 없었잖아.

그러니 돈 생각 말고 열심히 나 해. 돈은 우리가 챙긴다.”

기업은 당연하게 죄책감도 없다.

예술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국가는 예술가들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는 ‘사용자’ 로서, 상대적인 위치의 미술인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주고 협업을 했으면 한다.

지원이 아니라 협업이다.

그래야 예술가가 자본시장에서, 세계무대에서 당당해 질 수 있다.

7. 지원비라는 프레임에서의 사회의 인식

‘지원비’라는 의미는 ‘도와주는 돈’이다.

재난지원금, 수재민지원금 등 노동의 결과가 아닌 불쌍해서 주는 돈이다.

그래서 지원비는 나쁜 프레임일 수 있는데

“일 안하고 눈먼 돈 받는, 특혜를 받는, 세금 축내는, 불쌍한” 등으로 읽혀질 수 있다.

문화비평가 이선옥(전 예술인유니온 대표)의 글 : “가난한 예술가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중략~ 같은 빈곤자인데 아시바를 설치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받지 못하는 지원을, 가난한 예술가는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예술 노동이 더 소중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서? 사회에 유익해서?”

일반인 글 : “일반인인 내가 볼 때 게임중독자랑 뭐가 다른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뿐 가족들의 생계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노동도 안 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난 반달세” 라고 말한다.

나도 예술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

예술은 노동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의 대가는 인건비

인건비는 인권비이다.

8. 문제해결할 가능성

현재 미술인에 사용하는 용어는 작가비, 사례비가 있다.

작가비의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 황승흠교수의 250원은 (3)
 음악의 저작권 같은 '작가비'라는 것을 전시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부르면 저작권만 받나? 출연료 없이?
 작가비는 미술인의 작품에 대한 2차 저작물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말했듯이, 지원비 라는 말이 사회적인 인식에서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이니
 왜곡없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용어를 찾았으면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 '작품대여', '인건비', '작품제작비'등을 사용하면 좋겠다.
 예술인지원제도를 후원이나 협찬이란 말로 쓰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R&D 가 좋다.
 이러한 용어가 공무원, 일반인에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국공립 미술관 등이 개인인 예술가들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경로가 어려울 수 있다.
 미술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처리하고 용역 형태로 하기가 어려우면
 사단법인 협회 등이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수료는 받고 소송도 대신해 주고
 미술진흥법, 미술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을 지지하여 제정케 한다.

문체부, 미술진흥법 추진...미술진흥재단 설립·작가 보수 지급 ↵
 열악한 여건 놓인 미술가 창작 여건 개선 목적...다음달 입법 추진 ↵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6.09.06. 18:04 ↵

● 미술관련학과 취업률 : 56.8%

전체평균	순수미술	디자인	공예	연극/영화	문학
64.5%	56.8%	63.5%	66.8%	59.7%	58.0%

* 출처 :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

전체평균 (만원)	미술	공예	음악	연극	무용
1,255	614	1,175	1,337	1,285	861

* 출처 : '15년 예술인 실태조사

(1) "예술가가 가난한 이유는 예술의 높은 가치 때문"

연합뉴스 입력 2014.11.27. 07:11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저자 한스 애빙

-중략- 낮은 수입에도 계속 예술을 하려는 예술가의 '열정'이 예술가에 대한 착취 구조로 이어졌다는 것이 한스 애빙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비영리 예술 재단에서 특히 예술가를 착취한다"고 말했다.

이럴테면 비영리 단체의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을 예술가들도 알고 있다 보니 해당 단체의 공연이나 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대신 보수를 아예 받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가가 더는 가난하지 않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한스 애빙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를 감내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티스트 비용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작가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예술가를 착취하려는 비영리 재단도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예술가의 연대를 강조했다. -중략-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비영리 예술 재단에서 특히 예술가를 착취한다" 라는 문장은 이 분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우리나라 실정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글을 공개 했기에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비영리 예술 재단이라면 정부주도형문화재단, 사립형문화재단, 비엔날레,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비영리갤러리-대안공간 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경험으로 사립형문화재단, 사립미술관과 비영리갤러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티스트피가 너무 적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들의 희생과 열악함에 내 스스로 도움을 드리고 싶을때도 많습니다.

뒤돌아 보면 관장님, 대표님, 큐레이터들의 희생과 함께 제가 작가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 제도입니다.

정부주도형문화재단, 비엔날레, 국공립미술관 등에서 작가들을 착취하면 안되고 이에 작가들은 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면, 사립미술관, 비영리갤러리도 여건이 나아지고 모든 작가의 환경도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작가들은 큰 기관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발언을 못하고, 작은 비영리갤러리에는 항의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갤러리에 아티스트피를 요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영리갤러리와는 시장에서 작품을 팔고 수익을 분배하는 큰 전제가 있는데, 판매목적의 전시만 하는 것으로 아티스트피를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갤러리에서도 예산을 정부, 기업으로부터 받아 비영리전시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티스트피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리갤러리와는 문제점은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 공론화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문제라면 공론화 합니다.

김창겸 2019. 12. 11

(2) '옥인 콜렉티브' 이정민 진시우 부부가 숨지기 전 쓴 편지

입력 : 2019-08-19 05:04 / 수정 : 2019-08-19 09:54

미술 작가 그룹 '옥인 콜렉티브'의 이정민(48)·진시우(44) 부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 옥인콜렉티브 활동으로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긴 편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미술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정민·진시우 작가가 숨졌다. 옥인컬렉티브는 2009년 서울 종로구 옥인시범아파트 철거를 계기로 형성된 작가그룹이다. 1971년 인왕산 자락에 들어선 옥인아파트에 살던 김화용 작가의 집을 방문한 여러 작가가 버려진 공간과 남은 주민의 삶을 엮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듬해 4월 김 작가와 이정민·진시우 작가가 주축이 돼 옥인컬렉티브가 출범했다. 이들은 도시재개발, 부당하고, 위험사회 등의 문제를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풀어냈으며 인터넷 라디오 방송, 공연, 오프닝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지난해 1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최종 후보에 오를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미술계 안팎에선 옥인컬렉티브가 제작하는 작품은 특성상 판매 수익이 크지 않아 평소 생활고를 겪어 왔던 두 사람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정민 진시우 작가는 숨지기 전 함께 활동한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담은 예약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인연을 맺은 박재용 큐레이터가 이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메일에 따르면 두 작가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지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힘을 낸다"며 "2018년도 12월부터 불거진 옥인 내부 문제를 전해 들은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고통을 나눠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두 작가는 이어 "옥인의 전체 운영을 맡아온 저희(이정민·진시우) 방식이 큰 죄가 된다면 이렇게나마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잘못이고 온 힘을 다해 작업을 해왔던 진심을 소명하기에 지금은 허망함뿐"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바보 같겠지만 '작가는 작업을 만드는 사람' '예술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두 작가는 "10년 가까이 옥인 활동으로 함께했던 모든 예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에 늦은 감사의 말씀을 남긴다"고 했다. 두 사람의 빈소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발인은 20일 낮 12시, 장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3) 전시 출품대가 하루 250 원? 국립현대미술관 "개선하겠다"

박현주 미술전문

2019.10.21. 15:01

국립현대미술관이 작가들에게 지불하기로 한 출품대가가 '하루 250 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2019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 산출식'을 근거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확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체부에서 고시한 대가기준 산출식에 근거하여 약 5개월 간 총 4만 여원의 대가로 출품제안을 받은 작가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는 하루에 약 250 원 꼴"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문체부에서는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주는 보상으로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공시했다. 해당 기준안의 산출식에 근거하면 1일당 금액에 전시기간을 곱하여 전시에 참여한 작가 수대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계산식은 작가수가 많아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가들을 위해 고안한 제도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2019년 최저시급이 8350 원인데 오랜 기간의 창작과 육체적 노동의 합산 대가가 200 원이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국감에서 박양우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하도록 미술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고 윤범모 관장은 "작가 예우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끔 계속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보상의 논리와 구조

예술노동의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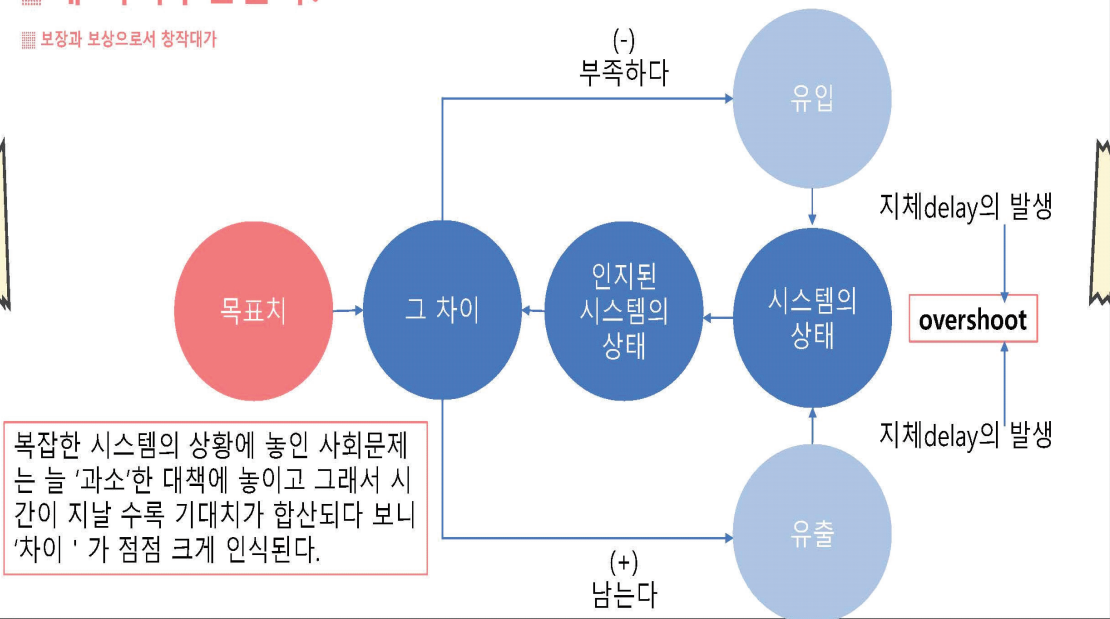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왜 지지부진한가?

보장과 보상으로서 창작대가



복잡한 시스템의 상황에 놓인 사회문제는 늘 '과소'한 대책에 놓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 수록 기대치가 합산되다 보니 '차이'가 점점 크게 인식된다.

■ 왜 지지부진한가?

■ 보장과 보상으로서 창작대가

아르코혁신TF의 권고로 구성된 '현장소통소위원회' 의 제1호 안건으로서
공정보상체계 도입을 위한 권고 채택

공론과 점진적 계획의 수립이 없는 과정은 과정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공정보상 문제가 '생태계 내 신뢰 문제'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한 쟁점에
대한 **공론과정이 부재했고** 이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한 공정보상 논의는
진전하기 어렵다

장르별로 특수성을 전제로한 개별 보상체계로 귀결되는 것이 적절한가?

■ 왜 지지부진한가?

■ 보장과 보상으로서 창작대가

- (1) 공정보상 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사업별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의 증액이 없다면 지원건수의 축소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예산편성 시기와 제도개선 시기의 불일치)
- (2) 예술창작에 대한 보상이 기본적으로 탁월함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나,
공공지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과도한 보상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공
정 보수 기준의 일정 배수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이럴 경우 해
외 초청 예술인에 대한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3) 공정보상 체계를 적용하기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년 재산정이 되
어야 한다(그럴 경우, 인상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거로 할 것인
지 아니면 물가상승률 등의 별도 기준을 근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함)

공정보상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질문들
2018. 9. (아르코 현장소통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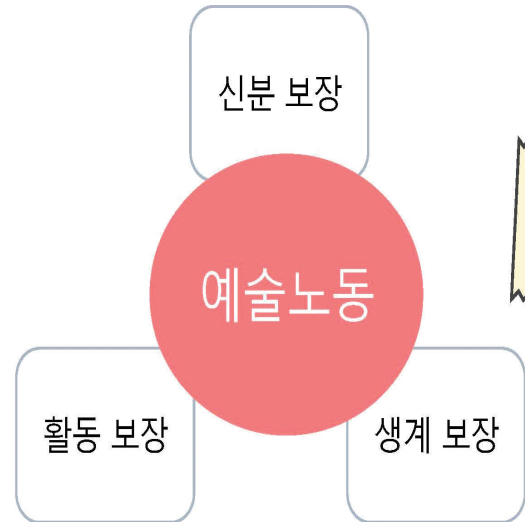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왜 지지부진한가?

■ 보장과 보상으로써 창작대가

한국의 예술인 쟁점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상체계는 단일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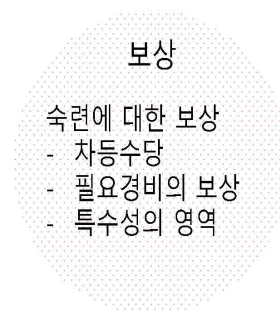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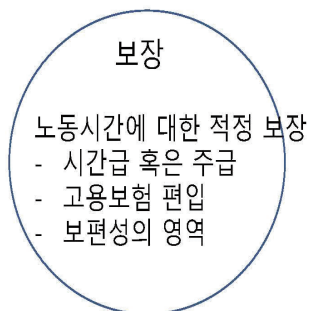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충분성' 과 활동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차등보상'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왜 지지부진한가?

■ 보장과 보상으로써 창작대가



창작대는 선택이 아니라 양자의 mix로 만들어짐

■ 왜 지지부진한가?

■ 보장과 보상으로써 창작대가

문제해결 자체가 아니라 문제해결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바둑판의 치수를 재서 중형으로 선을 긋는 일과 같다**. 전체를 조망하는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바둑판에서는 아무리 고수라도 제대로 바둑을 둘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 없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오규 소라이, 정담, 2020.